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8.

발 의 자 : 박정하 · 고동진 · 윤한홍
배준영 · 조은희 · 김도읍
우재준 · 정성국 · 최보윤
주호영 · 김교홍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,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또한,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.

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,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,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

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5조,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).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9항 전단 중 “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”를 “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매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1항(중전의 제10항) 중 “제9항”을 “제9항 및 제10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(중전의 제11항) 중 “제9항”을 “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항(중전의 제12항) 중 “제9항”을 “제9항 및 제10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⑭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⑮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⑯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항에 따른 임원 중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과 선거권자 수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자는 제외한다.

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5조의2(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) ① 제105조에 따라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횡수와 준수 여부
2.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
3. 허가(재허가를 포함한다)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

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

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5조의3(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)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(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)에 권리를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, 권리의 종류 또는 지역 등을 지정하여 권리를 신탁할 권리
2.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
3. 제10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4.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(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)
5.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
6.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·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

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6조제3항 전단 중 “제105조제9항”을 “제105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109조제1항제2호 중 “제105조제9항”을 “제105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113조제3호 중 “제105조제10항”을 “제105조제1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5조(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) ① ~ ⑧ (생략) ⑨ 제8항에 따른 <u>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	제105조(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----- <u>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매년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⑩ <u>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u> ⑪ -----제9항 및 제10항-----

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.

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⑫ -----제10항-----

-----.

⑬ -----

-----제9항 및 제10항-----
-----.

⑭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⑮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⑩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항에 따른 임원 중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과 선거권자 수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자는 제외한다.

제105조의2(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) ① 제105조에 따라 허가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1.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횡
수와 준수 여부

2.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
여부

3. 허가(재허가를 포함한다) 당
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

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
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
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5조의3(저작권신탁관리업자
회원의 권리) ① 저작권신탁관
리업자(제105조제1항 단서에
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)에
권리를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(이하
“회원”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
의 권리를 가진다.

1.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, 권
리의 종류 또는 지역 등을 지
정하여 권리를 신탁할 권리

2.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
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

3. 제106조제7항제1호에 따른
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
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
제공받을 권리

제106조(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) ①·② (생략)
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

4.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(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)

5.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

6.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·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

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6조(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 --제105조제10항-----

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~ ⑦ (생략)

제109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

3. ~ 9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13조(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2. (생략)

3.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

-----.

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09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105조제10항-----

3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3조(업무) 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105조제11항-----

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 심의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4. ~ 13. (생략)	4. ~ 13. (현행과 같음)